

#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40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6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김성기, 심현정, 이은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과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,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(안 제4조관련)
- 나.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·운영(안 제5조관련)
- 다.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(안 제6조관련)
- 라.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(안 제7조관련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,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11. 28. ~ 12. 9.(의회사무과-133) 의견없음.

##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과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”이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·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·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등)**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

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)**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(보건지소,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)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예우 및 지원)**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면제
2. 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감면
3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4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면제
5. 장기기증자,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

0분의 30 감경

2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,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·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.

**제7조(홍보활동)**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·운영한다.

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‘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’와 ‘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’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
② 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
③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┆ 마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┆ ┆ 면제 ┆ ┆

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100분의 30(30%)을 감경한다.

④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I(전액 감면)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

별표2 II(100분의 50감면)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

## [관계법령]

##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30., 2021. 12. 21., 2024. 2. 20.>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5.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

제6조의2(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)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,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,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.

제13조(장기이식등록기관)① 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희망자,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(이하 “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2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

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
4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

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.<개정 2017. 10. 24.>

1. 장기등기증희망자·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

2.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

3. 장기등기증희망자·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·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

4.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

5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·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범위)이 법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·뇌사자·사망한 자로부터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.<개정 2011. 4. 7.>

1. 자가이식용 조직

2.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기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류 또는 품목 제5조의2(국가 등의 책무)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)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 2. 4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2. 의료기관

3.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직기증자 접수·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

2.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·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

3.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

4.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

5. 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
2. 제13조 제2항 제1호·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

3.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
⑤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4. 1. 28.]

제27조(조직기증 지원사업 등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

2. 조직의 기증·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

3. 조직기증희망자 표시(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, 조직기증지원기관,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·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28.]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면제
2. 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감면
3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4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면제
5. 장기기증자,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분의 30 감경
2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,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·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